

#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신용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17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6. 1.

발의자 : 신용현 · 정춘숙 · 김중로  
조배숙 · 이동섭 · 김종회  
김경진 · 정인화 · 박준영  
박지원 · 황주홍 · 서영교  
김삼화 · 오세정 · 이태규  
김관영 · 심기준 · 정동영  
유동수 · 정성호 · 박주선  
김광수 · 박경미 의원  
(2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
이러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폭력피해자와 접촉하여 상담·치료·교육 등을 하게 되므로 엄격한 자격 제한이 필수적임. 따라서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시설의 장이나 상담원을 제외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, 심리치

료사, 간호사 등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경력의 전문성만 요구될 뿐 성 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은 자격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자격기준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
이에 상담소,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, 상담원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경우에도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상담소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1항).

##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상담소,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다”를 “상담소,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, 상담원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담소 등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상담소,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 고용된 종사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상담원 등의 자격기준) ①</p> <p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<u>상담소, 보호시설</u> 및 <u>통합지원센터의 장</u> 또는 <u>상담원이 될 수 없다.</u></p> <p>1. ~ 4. (생략) ② (생략)</p>	<p>제19조(상담원 등의 자격기준) ①</p> <p>----- -----<u>상담소, 보호시설</u> <u>및 통합지원센터의 장, 상담원</u> <u>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.</u>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